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758호(號) 1929년(昭和 4) 7월 12일 금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50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28호(號)(조선국유철도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별표(別表) 화물특정임률표(貨物特定賃率表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9(昭和 4)년 7월 12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국선(局線) 내(內) 특정임률(特定賃率)의 부문[部] 「소금[鹽]」의 항(項)에 아래[左]와 같이 추가(追加)함.

품목(品目)	발역(發驛)	착역(著驛)	급종별(級種別)	임률(賃率)	기사(記事)
	주안(朱安), 남시(南市), 진남포(鎭南浦)	국선(局線) 및 연대선(連帶線)	차급(車扱)	201마일(mile·哩) 이상(以上) 1할(割)2푼(分) 감(減)	주안발(朱安發) 본(本) 특정임률(特定賃率)은 조선총독부(朝鮮總督府) 전매국(專賣局) 탁송(託送)의 것에 한(限)하여 적용(適用)함. 본(本) 임률(賃率)은 1930(昭和 5)년 3월 31일까지에 한(限)하여 적용(適用)함.
				251마일(mile·哩) 이상(以上) 1할(割)4푼(分) 감(減)	
				301마일(mile·哩) 이상(以上) 1할(割)7푼(分) 감(減)	
				401마일(mile·哩) 이상(以上) 2할(割)5푼(分) 감(減)	
				501마일(mile·哩) 이상(以上) 3할(割) 감(減)	